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더드림단기채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23년 1월 26일(목)

3. 주요 변경 사항 :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(수익률 변동성 0.18% → 0.25% 등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→ 한국주택금융공사법, 대차대조표 → 재무상태표 등)
-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등

4. 변경사항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	한국주택금융공사법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부칙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>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

	합니다.	합니다.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<u>2023년 1월 26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4)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-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u>0.18%</u> 로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-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u>0.25%</u> 로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)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4) 운용자산규모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) 수시공시 나. 수시공시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용어 변경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	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2023년 1월 26일